

안전한 여객선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역별 캠페인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6월 5일(수)부터 연안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여객선 현장 점검과 종사자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객들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

캠페인은 해양수산부(각 지방해양수산청)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현장에서 여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4가지*를 집중 홍보한다. 6월 5일부터 한 달간 지역별 여객터미널에서 여객들에게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우리의 실천이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①매표·승선 시 신분증 제시, ②차량 선적 시 동승자 하차 및 선적 후 운전자 객실 이동, ③소란행위 및 지정장소 외 흡연 금지, ④차량·화물 고박 완료 이후 출항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 전수 점검을 시행하여 여객선 자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여객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5738)

안전한 여객선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승선권 구입 및 여객선 승선 시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여객선 등의 승선권·차량선적권·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및 「표준운항관리규정」 제21조(여객업무제) 따라 해표 및 승선시 등 신분증 확인 필요



**차량 선적 시 운전자만 탑승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차량 선적 후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안전한 객실로 이동해주세요.**

※ 「표준운항관리규정」 제21조(여객업무제) 따라 차량 선적 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자 외 하차 및 지정장소에 주차



안내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전기차를 특정 차량권 지정 장소에 선착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돼요.

전기차 및 PM(전기스쿠터 등) 여객선내 충전은 안 돼요.

※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및 「표준운항관리규정」 제22조(여객 준수 사항의 전달)에 따라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 금지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따라주세요.



**차량·화물 고박이 완료된 이후에 배가 출항할 수 있습니다.
고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선박 및 항로에 따라 고박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선박의 적재 면) 및 「표준운항관리규정」 제23조(화물관리)에 따라 여객선에 선적하는 차량 및 화물은 적재·고박 준수



고박은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선내 안전 방송을 꼭 시청해주세요! 안전 방송은 내 안전의 길잡이입니다.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0조(여객 등への 알림) 및 「표준운항관리규정」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에 따라 여객에게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전달

**여객선 안전은 나의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위반 시 관제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